



#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

##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(기한 6월 30일) 꼭 !! 시행하세요 .

셉티코 고객사님 안녕하십니까! 셉티코 산업안전 환경 알리미입니다.

이번 달 알리미는 화학물질관리법 관련 **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(6월 30일 토요일)**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.

본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업무이므로, 현재 사업장이 실적보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시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 (\* 자진신고 대상업체 등은 반드시 대상 여부 확인)

### 1.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제출대상 및 제출방법

구분	제출사항	제출대상	제출 시기 및 주기	제출 방법(온라인 시스템 or 우편 조서표 제출)	해당 기관
화학물질 관련	정기 업무	유해화학 물질 취급 실적보고	유해화학물질 관련 승인·신고·허가업체	1. 온라인 전산 보고시스템으로 제출 시 <b>유해화학물질실적보고시스템</b> 에서 직접 작성·제출 -> 사이트 바로가기( <a href="http://chemical.kcma.or.kr/">http://chemical.kcma.or.kr/</a> )  2. 우편(등기)으로 제출 시 <b>화학물질협회</b> 에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 작성·제출 ->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88, 유니온빌딩 6층 (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)	화학물질 관리협회
			1. 금지물질 제조·수입·판매 허가자 2. 제한물질 수입허가자 3. 유독물질 수입신고자 4. 제한물질·금지물질 수출승인자 5.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자 (유독·제한·사고대비물질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·운반, 사용)		

### 2.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적보고 제출대상 세부사항

구분	제출대상 세부사항	참조사항(서식 등)	관련 법령 및 벌칙 등	
화학물질 관련	실적보고 대상자 (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참고)	첨부 1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시스템 이용가이드 첨부 2 유해화학물질 실적보고서	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동법 시행규칙 제53조  미 보고 시 벌칙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11항 <b>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/b>	
	1. 금지물질 제조·수입·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자	첨부 3 금지물질 (제조, 수입, 판매) 세부실적보고		공통서식  대상자별 세부서식
	2. 허가물질의 제조·수입·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자	첨부 4 허가물질 (제조, 수입, 사용) 세부실적보고		
	3.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자	첨부 5 제한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		
	4.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자	첨부 6 유독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		
	5. 제한물질·금지물질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자	첨부 7 제한물질·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		
	6.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자 (유독·제한·사고대비물질 제조, 판매, 보관·저장·운반, 사용)	첨부 8 유해화학물질 (제조, (시약)판매, 보관·저장, 운반, 사용) 세부실적보고		

※ 유의 및 참고 사항 :

- 당해 연도 실적이 없더라도 "실적 없음"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실적보고 제출 확인 및 증빙은 '전산 보고시스템 이용 시 접수증', '우편 접수 시는 영수증'으로 제출 확인 증빙이 됩니다.
- 온라인 전산 시스템이 아닌 **우편으로 접수 시 반드시 등기**를 이용하여 주시고, 등기 송달내역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( <http://chemical.kcma.or.kr/> ) 02-3019-6731, 6737, 6755 ~ 7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

#### 산업안전 환경컨설팅

장외영향평가, 설치검사  
PSM/이행평가/자체감사/위험성평가  
위해관리계획서  
유해위험방지계획서  
위험물인허가  
안전보건개선계획서

#### 플랜트설계, 구매, 공사(EPC)

방폭/산업안전 EPC  
전문소방설계 및 공사  
산업플랜트  
화공/전력 플랜트  
원자력/발전플랜트  
특수설계&컨설팅

#### 산업안전 환경진단

안전관리대행  
산업안전진단  
연구실정밀안전진단  
사업장 시설물관리  
비산배출진단점검